

제 28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10.24.)

#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 목 차

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재 무 과	1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5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11
5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	"	17
6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보 건 정 책 과	20
7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9
9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 략 담 당 관	32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36
11	(재)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기 획 예 산 담 당 관	40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경 제 기 업 과	43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0. 14.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 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라.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1조
-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8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재무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02. ~ 10.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등 3개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 중이며 이에 따른 입법 운영의 문제는 없음.
- 특히, 해남군에서는 △자금관리 현황·평균잔액 △이자수입 총액 등 정보를 지자체 누리집에 연 2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자체가 금고에 넣어두는 예산은 말 그대로 국민 세금인데, 금융기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약정이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이율을 비롯한 약정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회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시행 2019. 11. 27.]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274호, 2019. 11. 27., 일부개정]

제 2조 (금고 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2 2015.7.22.)

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개정 2009.8.12)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07. 9. 27)
-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9. 27)(전문개정 2009.8.12 2015.7.22.)
-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개정 2009.8.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쟁송사무 지원,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1)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세정공무원 교육 참가)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나. 출연금액: 4,796천원

## 1) 2025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출연금	4,769	4,796	4,796	0	0	4,796	

※ 산출기초 : '23년 결산 보통세 39,970,184천원 × 1.2/10,000

### 다. 부서의견

- 1)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4. 참고사항

가. 출연기관 현황

나.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협조 공문 등)

##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4,796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 2024년 우리군 교육실적 : 10개 과정 10명 수료
  
-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세 불복사건 관련 자문 : 2023년 4건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처리장 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북상 병곡 지구는 거창군 대표 여름 관광지로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1) 사업명 :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2)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3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4. 1. ~ 2027. 12.
- 4) 사업비 : 7,651백만원(국 4,591, 기 1,836, 도 612, 군 612)
- 5) 사업내용 : 처리장 신설 Q=240m<sup>3</sup>/일, 하수관로 L=5.7km 등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b>계</b>				<b>2,377</b>	<b>30,901</b>	
토지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3	답	1,185	15,405	공사지가 13,000원/m <sup>2</sup>	
토지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4	답	1,192	15,496	공사지가 13,000원/m <sup>2</sup>	

## 다. 추진경과

- 1) 2022.12. :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2) 2024.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3) 2024. 7. 23. :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안) 등 주민설명회
- 4) 2024. 8. 6. : 하수처리장 부지 소유자 사전 협의
- 5) 2024. 8. 14. : 현장 감정평가 실시

## 라. 향후계획

- 1) 2024.10. : 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 2) 2024.11. : 하수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
- 3) 2024.12. : 환경부 재원 협의 및 기술 자문, 각종 인허가 협의
- 4) 2025.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5) 2025. 4. ~ 8.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공사 발주 및 착공
- 6) 2027.12. :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

## 마. 기대효과

- 1) 미처리 하수의 방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분계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 2)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

## 3. 관련법규 및 조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 3. 검토의견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북상면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북상면 병곡리 70-3(1,185㎡), 북상면 병곡리 70-4(1,192㎡)번지를 매입하여 북상면 병곡마을, 장자터, 가리실 마을 등 90가구의 주민들에게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 5월 21일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함.
  - ⇒ 용역기간 : 2024. 5. 21 ~ 2025. 3. 16
  
- 지난 7월 23일 마을주민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소유자와 사전 협의 후 현장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음.
  - ⇒ 감정가 : 349,691백만원(토지 314,952 / 지장물 등 34,739)
  - ⇒ 평당가격 : 437,250원
  
-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상면 병곡지구는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서 하수의 적정 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등록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신청 방법,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1,00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6. 28.~7.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조례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연간 지원대상자를 1,663명, 1인당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은 120만원으로 예상하여 매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도내 유사 사례로 하동군에서는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시행2013.04.10.)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6월 30일 통영시에서는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1조·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제6조에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7조와 제8조에는 신청 방법과 사무의 위탁을 정하였음.
- 일부 지자체인 화천군, 평창군, 양구군, 광양시, 통영시, 장성군 등 대학생 무상 등록금을 도입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역차별받는 상황이 되었음.
- 인구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 육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면 당초 입법예고 시 지원요건에 대해 주민 의견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요건을 변경하였음.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시	최종안
<p><b>제2조(거주요건)</b>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거주요건”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u>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은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u></p> <p>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p> <p>나. 과거부터 군에 둔 주민등록 이력을 모두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p> <p><b>제3조(지원대상)</b>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일 것</li> <li>2.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일 것</li> <li>3. 군수가 정한 일정 학점 이상일 것</li> </ol> <p>② 조례 제6조제1호·제2호의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은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로서 대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로 한정한다.</p>	<p><b>제2조(지원요건)</b>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학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금 지원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일 것</li> <li>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할 것</li> <li>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등록금 지원연도 1월 1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li> <li>나.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다만 재학기간 동안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li> </ol> </li> <li>4. <u>1명 이상의 가족</u>(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를 말한다)이 등록금 지원연도 1월 1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u>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u></li> </ol>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조영자 등 4명	<p>○ 지원요건 완화 의견(안 제2조)</p> <p>- (원안) 가족 1명과 대학생 모두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함</p> <p>- (의견) 다른 지역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일 경우 전월세 보증금 보호, 예비군 훈련 등의 이유로 대학 소재지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부모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어도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p>	<p>○ 지원요건 구체화하여 완화</p> <p>- 대학생: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다만 재학기간 동안 관내 주소를 둔 경우)</p> <p>- 1명 이상의 가족: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p>	○ <b>반영</b>
유순이	<p>○ 등록금 전액 지원 의견(안 제4조)</p> <p>- (원안) 지원금액 반기별 100만원 이내</p>	<p>○ 군의 재정 여건 고려 필요</p> <p>-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 자칫하면 고소득층 지원정책 될 우려 있고</p> <p>- 전액 지원 시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의 소지</p>	○ <b>미반영</b>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급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수요 맞춤형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학비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이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개 요

- 1) 근 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2) 출 연 금: 4,695백만원(증 1,000백만원)

구 분	2024년 편성액	2025년 요구액	증 감
계	3,695	4,695	1,000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	1,000	1,000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780	780	-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780백만원)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1,000백만원)

#### ↳ 2025년 신규추진

#### 나. 부서 의견

- 1)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 2)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출연금 증액 필요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나. 거창군장학회 현황 및 주요 사업 현황: 책자 참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년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을 (재)거창군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장학기금 확대, 장학사업 추진에 지난해와 같이 3,695백만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신규로 1,000백만원을 요구하였음.

## ○ 거창군장학회 출연 근거

###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근거

###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번 임시회(제282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지원대상자 약 1,663명 / 지원금액 연 120만원

## ○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근거

###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 2024년 10월 현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2024년 예산 780백만원 중 43명 50백만원 집행, 예산잔액 730백만원

#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0. 14.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 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체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계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삭제하여,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이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2조)

다. (군의 책무)->(군수의 책무) 변경 및 약칭 표현 수정(안 제3조)

라. 상위법령 저촉 삭제 및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으로 변경함(안 제4조3)

마.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삭제(안 제5조제1항제2호)

바. 조례상의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군->거창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7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 「의료법」 제3조
- 「노인복지법」 제3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보건정책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30. ~ 10. 0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체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주민의 생명 보호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2호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1조에 자치조례임을 명기하고, 안 제2조에 상위법령 재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음.

-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부터 분만 진료를 포기하는 산부인과까지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함

- 거창군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0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개정(2024. 11. 23.)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 1) 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
  - 2) 수수료: 건당 3,000원
- 나. 진료비 등의 납부 수단 제한 정비함(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5조

- 2) 「전자정부법」 제1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30.~10.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11.23.)에 따른 사항을 반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총리령) 제5조
  - 「전자정부법」 제14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기존 수수료와 같은 금액이므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2024.11.23.시행)

※ 타 지자체 개정 예정 현황

3,000원	3,500원 ~ 4,000원	5,000원	미정	비고
60개소	1개소	2개소	8개소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신뢰와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 관련법령 발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 8.] [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일부개정]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 원을 내야 한다.

↓[시행일: 2024. 11. 23.]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

□ 「지역보건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가. 시설 개선,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병원은 정상화되었으나,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 직영은 어려운 상황임.
- 나.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 (3,007㎡)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 44명

※ 환자수 : 75명(2024. 9. 30. 기준) /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환자 전원 조치

##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2) 위탁기간: 2025. 1. ~ 2029. 12.(5년간)
- 3)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4)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병원 운영 능력(인력, 재정, 기술) 등을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다. 그간 운영 상황

- 1) 아림의료재단 거창서경병원: 2006. 10. ~ 2023. 3.
- 2) 거창군 임시직영: 2023. 3.
- 3) 창녕서울의료재단: 2023. 4. 1. ~ 2023. 5. 11.
- 4) 거창군 직영: 2023. 5. 12. ~ 현재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1)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2일부터 거창군에서 직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탁 기간도 5년으로 적절함.

- 또한, 병원 운영은 의료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다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준공(2024. 10.)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를 정함(안 제3조)
- 다. 입주 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이용료 및 면제를 정함(안 제6조)
- 마. 퇴거 및 이용제한,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61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 나. 예산조치

- 1) 설립비: 2022년~2024년 예산 501천만원(국비 75, 도비 110, 군비 311)
  - 2) 운영·관리비: 2025년 예산 4천만원 확보 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12 ~ 10. 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 제5호)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61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경비가 필요하며 1차년도인 2025년에는 4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매년 1백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10월 준공을 앞둔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농업 근로자 기숙사 현황

- 사업기간 : 2023. 10. 26. ~ 2024. 10. 24.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7-3(구, 축협동물병원)
- 총사업비 : 5,010백만원(국 750, 도 150, 특조 1,000, 군 3,110)
- 시설규모 : 4층, 연면적 1,118.08㎡(338.2평), 부지면적 962.7㎡
- 주요시설 : 원룸 18호실(4인 1실, 72명 수용), 사무실, 교육장 등

구 분	면 적(㎡)	주요시설	비고
합 계	1,118.08	원룸 18세대, 교육장, 사무실 등	
4층	272.72	원룸(35.27㎡ x 6세대)	
3층	290.42	원룸(35.27㎡ x 6세대), 옥외데크	
2층	427.86	교육장(135.83㎡), 원룸(35.27㎡ x 6세대)	
1층	127.08	사무실(33.88㎡), 공공화장실, 창고	

-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입주와 퇴거,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와중에 농막, 하우스 등 임시방편이 대부분이었던 주거 형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음.
- 기숙사 완공과 함께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근로자는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고용 농가는 지속가능한 농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0. 11.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한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등 관광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나. 관광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정비함(안 별표)

1) 법령에서 위임된 관광사업별로 정비

2) 관광사업 지원 확대

가)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나) 지역업체 등과 관광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상품 지원

다)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업체 및 소지 관외 관광객에게 물품·상품 지원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제6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5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8. 22. ~ 9.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양평가: 반영함(안 제4조의2)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단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진흥을 통해 생활인구 증대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관광진흥법」 제48조 · 제7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에게 관광상품 개발 · 홍보비 지원,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해 연간 50백만원이 소요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진흥을 위한 것으로써
- 안 제4조의2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내용을 보장하고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음.
- 2024. 9. 26일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거창군에서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선제 대응을 하고자 함.
- 한편,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할인증 발급 QR 등 시설 미흡, 할인업체 부담 등의 문제로 효과가 저조함에 따라
- 거창군에서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와 가맹업체에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정주 인구감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 관련법령 발췌

### □ 「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거창군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 2) 사업내용

-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

나.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 1) 2025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5년	-	50,000	50,000	0	0	50,000	

다. 부서 의견

- 1)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4)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 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 **도내 출연금 현황** : 2023년 5개 시군(3억 원), 2024년 5개 시군(2억 5천만 원)

구 분	시 군	과	제	출연금
2023년	고성군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		1억 원
	함안군	함안군 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		5천만 원
	합천군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5천만 원
	거창군	거창군 및 인근시군 도로·철도 개설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5천만 원
	밀양시	밀양시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및 전략 연구		5천만 원
2024년	고성군	고성군 지속가능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5천만 원
	함안군	함안군 지속가능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5천만 원
	사천시	사천시 지속가능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5천만 원
	밀양시	밀양시 지속가능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5천만 원
	양산시	양산시 지속가능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5천만 원

⇒ 2024년도 우리군 경남연구원 용역 현황 : 4건 19,871천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서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은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국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5조의2(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2. 제안이유

-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2)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 3) 사업비 : 450,000천원(군비)
  - 2025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비 고
2025년	450	450	

- 4)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 나. 부서 의견

- 1)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 2)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 보증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 3) 경남도내 타 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및 경남도와 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 4. 참고사항 : 책자 참조

##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4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 거창군 주요실적 현황

구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년 상반기 실적	992건	252억원	2,691건	494억원	106건	14.2억원

- 경기 위축과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상승,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금융지원 확대’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함.
-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지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